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1,635,734	13,249,072
일반회계	400,234,789	12,007,044
특별회계	41,400,945	1,242,028
기타특별회계	41,400,945	1,242,0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60,008	73,800
수질개선특별회계	14,262,710	427,88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6,744	17,902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8,421,071	252,632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50,895	19,52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73,655	110,21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30,336	3,9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85,713	38,57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5,050,162	151,505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09,807	3,294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279,804	128,394
원외탕전원특별회계	480,040	14,401

제 2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4,585,083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4,700,000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